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고민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013 발의연월일: 2024. 12. 27.

발 의 자:고민정·정태호·위성곤

박정현 • 이훈기 • 추미애

조인철 · 김동아 · 김준혁

장철민 · 김태년 · 박은정

한정애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교육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초·중·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될 예정임.

다만, 시행일 이전 설치된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데, 노후화된 교육시설은 화재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함.

이에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(안 제10조의3 및 법률 제20181호 부칙 제2조 등).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181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교육시설이 신설(신축·증축·개축· 이전 중인 교육시설을 말한다)되는"을 "교육시설의"로 한다.

법률 제20181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부칙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된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제3조(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일(2025년 2월 7일) 전에 설치된 교육시설의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20181호 교육시설 등의 안 법률 제20181호 교육시설 등의 안 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3(소방시설 설치지원 등) 제10조의3(소방시설 설치지원 등) 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 설의 장은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제12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 설이 신설(신축ㆍ증축ㆍ개축ㆍ 재축·이전<u>중인</u> 교육시설을 말한다)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프 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 러설비 등의 화재 안전관리 강 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. 1. ~ 5. (생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20181호 교육시설 등의 안 법률 제20181호 교육시설 등의 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(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제2조(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

건축하기 위하여 「학교시설사 지된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적 업 촉진법 제5조의2에 따라 용한다.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 청에 신고하는 분 또는 「건축 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<신 설>

용례)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3의 개 이 법 시행 이후 학교시설을 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설

> 제3조(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 과조치) 이 법 시행일(2025년 2 월 7일) 전에 설치된 교육시설 의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 설의 장은 이 법 시행 이후 2 년 이내에 제10조의3의 개정규 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.